이 보도자료는 2022. 10. 6. 10:30에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</u>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정우식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453

보도자료 2022. 10. 6.(목)

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

- 해외 가상자산을 이용한 1조원대 외환사범 엄단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(부장검사 이일규)는 일본, 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(2개 조직 송금합계액 9,348억원)을 수사하여,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기소,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,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 중임
 - (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)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,957억원을 일본에 불법송금한 피고인 4명을 기소하고(3명 구속기소, 1명 불구속기소),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
 - (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)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,391억원을 중국, 홍콩 등의 해외 계좌로 불법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피고인 4명을 구속기소하고,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였음
 - 또한,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외회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고, 범행 대가로 **2,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**을 수수한 **시중은행** 前 지점장 1명도 구속기소하였음
- 향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,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, 불법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, 외국 법집 행기판과 공조하여 해외에서 이전된 기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그 불법성 여부 조사,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,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

I

공소사실 요지

① 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 범행

- 피고인
- A○○[39세, '¬'회사 사내이사], B○○[39세, 'ㄴ'회사 대표이사], C○○[44세, 'ㄷ'회사 대표이사], D○○[50세, 'ㄹ'회사 대표이사]

○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공모하여, ① '21. 9.경~'22. 6.경 관계당국에 대한 신고없이 영업으로 합계 3,400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영업으로 매매 [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, ② '21. 4.경~'22. 6.경 금, 반도체 칩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들이 미치 금 등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304회에 걸쳐 합계 4,957억여 원 상당의 외화 송금 [외국환거래법위반] 등

②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 범행

- 피고인
- H○○[33세, '□'회사 대표이사], I○○[33세, 'ㅂ'회사 직원], J○○[36세, '△'회사 직원], K○○[36세, '○'회사 대표이사]
- 공소사실 요지
- 피고인들은 ① '21. 9.경~'22. 6.경 관계당국에 대한 신고없이 영업으로 합계 3,500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영업으로 매매 [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, ② '21. 6.경~'22. 6.경 전자부품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 법인들이 마치 전자부품 등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281회에 걸쳐 합계 4,391억여 원 상당의 외화 송금 [외국환거래법위반] 등

③ 시중은행 前 지점장 범행

- 피고인
- R○○[52세, 시중은행 前 지점장]
- 공소사실 요지
- ① A○○ 등과 공모하여 '22. 5.~6.경 허위서류를 이용해 13회에 걸쳐 163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, I○○ 등과 공모하여 '21. 10.~'22. 6.경 허위서류를 이용해 244회에 걸쳐 합계 4,023억여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[외국환거래법위반], ②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 [위계공무집행방해 등], ③ 위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I○○로부터 현금 등 2,500만 원 상당 수수 [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 ④ '22. 5.경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해당 은행에 접수되자 이를 C○○에게 누설[은행법위반]
 - ※ 상세 처분 내용은 별지 #1. '주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 현황'참조

Ⅱ 주요 수사 경과

○ '22. 2. 금융당국, 자료 이첩

○ '22. 2.~7. 계좌추적, 가상자산 거래내역 압수수색 등

○ '22. 7. 금감원, 수사참고자료 이첩(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내용)

○ '22. 8. 10. 피고인 AOO, BOO, COO 구속

○ '22. 8. 26. 피고인 AOO, BOO, COO 구속기소(DOO 불구속기소)

○ '22. 9. 16. 피고인 IOO, JOO, KOO 구속

○ '22. 9. 23. 피고인 HOO, ROO 구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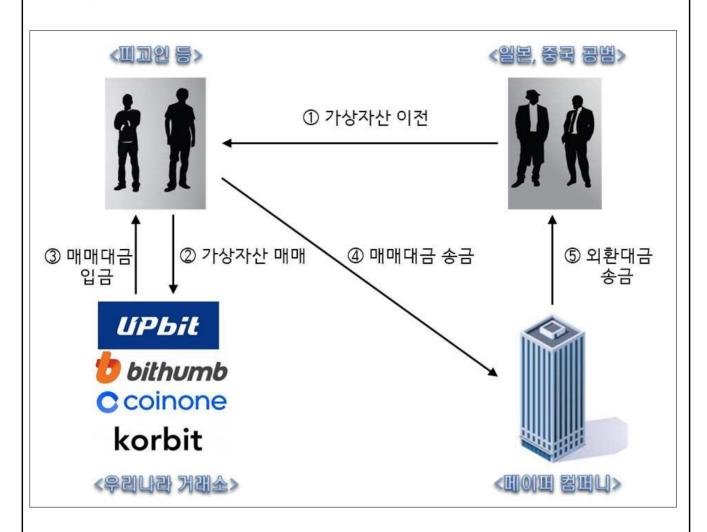
○ '22. 9. 30. 피고인 IOO, JOO, KOO 구속기소

○ '22. 10. 6. 피고인 HOO, ROO 구속기소



범행 방법 및 특이사항

Ⅱ 범행 구조



- 일본·중국 내 공범들이 피고인들 또는 그 사용의 차명계정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면, 이를 피고인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
- 그후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**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다음**, 해외송금을 위해 사전에 설립하거나 확보해 둔 다수의 **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**
- 은행에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마치 위 회사들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해외 계좌로 송금
- 이때, 피고인들은 해외에 있는 공범들과 **사전에 약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** 공제하고 송금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 취득

② 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 범행

- (일본 거주 한국인 공범들과 연계) 피고인 A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외화를 송금받은 일본회사 甲의 대표이사 FOO, 乙의 대표이사 GOO 및 甲의 직원 EOO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, 특히 FOO는 우리나라에서 동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일본으로 도주하여 지명수배 상태임
 - ※ E○○, F○○, G○○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청구, 여권무효화 조치, 인터폴 적색 수배 등 송환 절차가 진행 중임
- (본건으로 거액의 이익 취하고 호화·사치 생활) 피고인들은 불과 1년여의 범행으로 모두 270억원의 수익을 얻어, 그 중 223억원은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고, 나머지 약 47억원의 수익을 직접 취득
- 범죄수익으로 외제차·명품 구입, 고가의 부동산 매수,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입(각 추징보전 조치) 등 호화·사치 생활을 영위함
 - ※ 별지 #2. '피고인들 구입 외제차 등 사진' 참조

③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 범행

- (중국 내 공범과 연계) 피고인 I○○ 등은 중국계 한국인 또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에 있는 공범과 유령법인을 통한 송금 방식을 공모하여 범행에 이름
- (차명 법인 이용, 철저한 현금거래를 통한 범행 은폐) 피고인 I○○ 등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언제든 해외로 도피가 용이한 중국인 들을 대표로 내세워 수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철저하게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름
 - ※ 별지 #3. '피고인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가상재산 매각대금 현금 사진' 참조

④ 시중은행 前 지점장 범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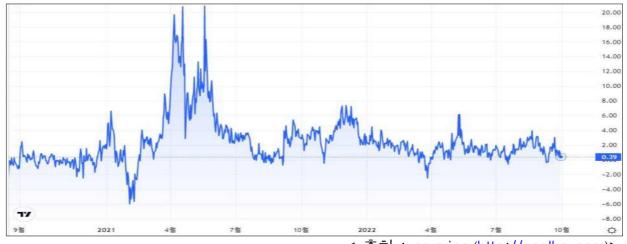
- (규제 회피방법을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범행 가담) 시중은행前 지점장 ROO은 IOO 등의 거래에 대한 '의심거래 경고(STR Alert)'를임의로 본점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, 이와 같은 사실을 위 IOO에게 알려주며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
 - ※ '의심거래 경고(STR Alert)'란 은행 시스템에 은행 자체적으로 정한 의심거래 유형을 입력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지점에 통보되게 하고 해당 지점은 통보된 거래의 문제 유무를 확인한 후 본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
- (범행 가담으로 직접 대가 취득 및 지점의 실적 증대) 해당 지점장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현금 2,400만원,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
- 아울러, 前 지점장이 근무한 해당 지점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**외화 매매** 이익·수수료 등 총 21억여 워의 영업이익을 얻음

IV

이 사건 수사 의의

□ 범행의 성격

○ 최근 몇 년간 동일한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'김치 프리미엄' 현상 발생



< 출처: cryprice (http://scolkg.com)>

※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과 해외거래소인 바이넌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차이를 일일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서 크게는 20% 가량 차이가 나고 있음

- 이 사건을 통해서 '김치프리미엄'을 노린 일본·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초 적발하여 처벌함
 - (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교란과 일반투자자들의 손해) 피고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익이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매하고 수익금을 빼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, 이로 인해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불가피하고, 그 피해는 고스란히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감 ⇒ 국내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
 - (우리나라 대외지급수단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외환관리시스템의 부실 초래) 피고인들이 취득한 거액의 이익을 일본·중국 등으로 빼돌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외환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

□ 시중은행 외화송금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필요성 확인

○ 시중은행의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송금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, 시중은행의 외화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

□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

- 금융당국의 이첩자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 받음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
- 최초 거액 외화 송금 관련 단순 의심거래에 대해 계좌추적 등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
- 금융감독원과는 해당 은행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수사참고자료 송부 및 관련 정보 공유, 전문인력 파견 등 유기적으로 협력함

□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

○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, 고가 외제차 3대(3억원 상당), 고가 콘도 분양권(2억 6,000만원 상당), 전세보증금 반환채권(5억원 상당) 등 12억원 상당의 부동산, 동산 등을 추징보전하였고,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 중

□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종전 규정이 수사 진행에 제한으로 작용

- 시중은행 前 지점장의 범행은 A○○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'22. 7.경부터 이미 상당히 파악되어 있었으나, 당시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에 의할 때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곤란하였음
 - ※ 종전 규정상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었으며, 수사중인 사건의 관련사건 해당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음
- '22. 9. 10. 시행된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」으로 중요 범죄인 경제범죄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면서 신속한 수사개시 및 진행이 가능

V

향후 계획

- (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등 수사) 피고인들의 추가 불법송금 등 여죄 및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외 공범 등에 대하여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임
- (은행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수사) 본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에서 '상당한 주의와 감독'을 하였는지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
- (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수사)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하여 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 등 국내 송환, ② 대규모 가상 자산 거래의 자금원과 해외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관련 불법여부,
 ③ 해외로 이전된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□

#1. 주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현황

	피고인		공소사실 요지	비고
1	일본 관련 범행	A 00	공모하여, • '21. 9.~'22. 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3,398억원 가상자산 매매	구속기소
2		ВОО	[특정금융정보법위반] • '21. 4.~'22. 6. 수입대금을 기장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 업무방해 [업무방해]	구속기소
3		C 00	• '21. 4.~'22. 6. 범죄수익 약 47억원 은닉(C ○ ○ 은 '21. 6.~'22. 6. 범죄수익 약 39억원 은닉) 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	구속기소
4		D 00	• '21. 5.~'22. 6. 타인 실명으로 4,040회 금융거래 [금융실명법위반] • '21. 4.~'22. 6. 신고 없이 약 4,957억원 외환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[외국환거래법위반]	불구속기소
5	중 관련 행	H 00	공모하여, • '21. 9.~'22. 2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2,100억원 기상자산 매매 [특정금융정보법위반] • '22. 1.~2. 범죄수익 약 25억원 은닉 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	구속기소
6		100	 • '21. 6.~'22. 2. 타인 실명으로 2,113회 금융거래 [금융실명법위반] • '21. 6.~'22. 2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2,146억원 외환 송금하여 외국환업무 영업 [외국환거래법위반] • '22. 1. 지점장 R○○에게 현금 2,000만원 교부 [특경법위반(증자등)] 	구속기소
7		Joo	 '22. 2.~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1,000억원 가상자산 매매 [특정금융정보법위반] '22. 3.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외환송금 업무병해 [업무병해] '22. 3.~6. 범죄수익 약 155억원 은닉 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 '22. 4.~6. 타인 실명으로 1,166회 금융가래 [금융실명법위반] '22. 3.~6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1,767억원 외환 송금하여 외국환 업무 영업 [외국환거래법위반] '22. 4~5. 지점장 ROC에게 300만원 상당 금품 교부 [특경법위반(증지등)] 	구속기소

8	중국 관련 범행	K 00	 '22. 4.~6.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407억원 기상자산 매매 [특정 금융정보법위반] '22. 4.~6. 범죄수익 약 56억원 은닉 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 '22. 4.~6. 타인 실명으로 122회 금융거래 [금융실명법위반] '22. 4.~6. 등록 없이 업으로 약 478억원 외환 송금하여 외국환 업무 영업 [외국환거래법위반] '22. 5. 지점장 ROO에게 현금 200만원 교부 [특경법위반(증재등)] 	구속기소
9	지점장	ROO	 ① I○○ 등과 공모하여 '21. 10.~'22. 6. 허위서류 이용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,023억원 외환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. ② A○○ 등과 공모하여 '22. 5.~6. 허위서류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3억원 외환 송금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 [외국환 거래법위반] '21. 10.~'22. 6.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허위 자료를 입력하여 위계로써 한국은행의 외화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 방해 [위계 공무집행방해 등] '22. 1.~5. I○○ 등으로부터 합계 2,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[특경법위반(수재등)] '22. 5. 계좌추적 영장 집행사실을 C○○에게 누설 [은행법위반] 	구속기소
10 ~ 12	일본 관련 범행	E00 F00 G00	A○○ 등과의 공범	체포영장 (범죄인인도 청구등)
13 ~ 17	중국 관련 범행	L00 M00 O00 P00 Q00	H○○ 등과의 공범	체포영장

#2. 외제차 등 사진







#3. 현금 사진

